

『구미시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1조, 제2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
 - 변경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
- 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환수규정을 조례로 규정(안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서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권자가 아닌자로’로 변경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